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35
----------	-------

발의연월일 : 2026. 1. 19.

발 의 자 : 김재섭 · 김위상 · 엄태영
신동욱 · 서천호 · 강승규
이헌승 · 이성권 · 김기현
조은희 · 강명구 · 최수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형량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적으로 두고 있음.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신상정보의 등록기간 동안 공개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악명 높은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종료로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등록기간 및 공개기간을 연장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사망한 날까지로 하고, 등록의 면제 신청 가능기간을 최초등록

일부터 15년 또는 20년에서 30년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10년”을 “3년”으로, “30년”을 “사망한 날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제1호 중 “30년인”을 “사망한 날까지인”으로, “20년”을 “3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 ----- ----- ----- ----- ----- ----- ----- ----- ----- -----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u>10년</u> 초과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u>30년</u>	1. ----- ----- ----- <u>3년</u> ----- -----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u>3년 초과 10년 이하</u> 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u>20년</u>	<u>사망한 날까지</u> <u><삭 제></u>
3. · 4. (생략)	2. · 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 ⑧ (생 략)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생 략)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u>30년</u>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u>20년</u> 2.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u>20년</u>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u>15년</u> <u>3. · 4.</u> (생 략) ③ · ④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1. ----- -----<u>사망한 날까지인</u>----- -----<u>30년</u>----- <u><삭 제></u> <u>2. · 3.</u>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